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1998년 11월 24일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1998년 12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 12월 22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정호문)

가. 개정 사유

-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시행코자 함.

나. 주요 골자

- 고용직 정년단축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58→57세)개정
- 휴직관련조항보완
 - 휴직중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병역법규정에 의거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사유 소멸된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명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재천)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 등에 의거 제5조“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였으며
- 제8조(휴직) 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라 개정하였으며
- 제8조의2(휴직기간)은 신설 조항으로 휴직기간은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 제8조의3(휴직기간 효력)은 휴직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 30일 이내 임용권자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하는 개정 조례안임.

4. 관련 법 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및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2(휴직기간)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의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 중 “58세”를 “57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 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휴직) <u>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1.~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제8조(휴직) 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u></p> <p>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																		
<p>[별표] 지방공용직공무원의 직종 ·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구 분</td> <td style="width: 33%;">1 종</td> <td style="width: 33%;">경노무</td> </tr> <tr> <td>직 명</td> <td>지도원</td> <td>사 환</td> </tr> <tr> <td>근무상한연령</td> <td>58세</td> <td>58세</td> </tr> </table>	구 분	1 종	경노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58세	<p>[별표]</p> <p>.....</p> <p>.....</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57세</td> <td>57세</td> </tr> </table> <p>비고 : (현행과 같음)</p>	57세	57세
구 분	1 종	경노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8세	58세																	
.....																	
.....																	
.....	57세	57세																	